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 정관	표준번호	학교법인 1-1-1
		제정일자	1967. 3. 9
		개정일자	2024.01.30.
		법인이사회 최종 통과일자	2024.01.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전문과학기술을 연마하며 투철한 민족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세계 평화 및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할 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수성전문대학(교명은 “수성대학교”이라 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1308호(서초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30.)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2.26.)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3. 이사 중 1인은 상임이사로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년(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

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에 반할 때
4. 학교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할 때
5.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할 때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방이사의 자격)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2.26.)

1. 천주교 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이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1.2.26.)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18조(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

제19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③ 제2항제2호의 추천위원은 이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 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에 규정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1.2.26.)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⑥ 제5항의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3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⑧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⑨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있어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한다.(신설 2021.2.26.)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단,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소집 일자, 장소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1.30.)

제31조(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2.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사학윤리 및 청렴의무(개정 2022.11.30.)

제33조(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 1)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33조2(청렴의무) 이사장, 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30.)

제33조3(행동강령) 제33조의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11.30.)

제4장 수익사업

제34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서비스업
4. 도매 및 소매업
5.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5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사업소의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6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 사업소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에 둔다.

제37조(관리인) ① 제34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8조(해산) ① 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3. 파산한 때
4. 사립학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해산인가·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2.26.)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0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2.26.)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41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무기간 :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급여 : 연봉계약으로 하며, 이사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 신분보장, 징

계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25., 2024.1.30.)

1. 근무기간 :

- 가. 교수 :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라.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제51조에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

6.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마감일 15일 이상 채용분야, 채용자격,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⑥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⑧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⑨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2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의 교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⑪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의 보직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보하며, 그 외의 보직은 해당 학교의 장이 보한다.

⑫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1. 제4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관 신분보장

제43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1.3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소속변경자가 학위취득이 필요한 때

제44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26., 2024.1.30.)

1. 제43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43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3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43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3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3조제7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3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3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3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3조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3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3조제1호와 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24.1.30.)

- ② 제43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43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1.2.26.)

제47조(직위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으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21.2.26.)

제48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신설 2019.6.25.)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6.25.)

제49조(당연퇴직) 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개정 2024.1.30.)

②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24.1.30.)

제50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4조(명예조기퇴직수당) 명예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30.)

1. 총장이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 신규충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원 휴직에 관한 사항
4. 교원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
5. 교원 포상 및 휴면케어 우수실천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교원 직위해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교원 명예(조기)퇴직신청서 심사에 관한 사항
8. 교원 연봉이의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
9. 교원 연구년 및 산업체 연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10. 교원인사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관계법령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제58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대학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간서명한다.

제6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6.25.)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6.25., 2022.11.30.)

1. 학교법인 이사 3명

2. 당해 학교 교원 4명

3. 외부위원 2명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천한다.(개정 2019.6.25.)

1.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기타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2.11.30.)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9.6.25.)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중전 제65조는 제69조로 이동 (2019.6.25.)]

제66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9.6.25., 2024.1.30.)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9.6.25., 개정 2024.1.30.)

[중전 제66조는 제77조로 이동 (2019.6.25.)]

제6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중전 제67조는 제65조로 이동 (2019.6.25.)]

제68조(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6.25.)

[중전 제68조는 제66조로 이동 (2019.6.25.)]

제69조(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6.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7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 (2019.6.25.)]

제70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중전 제70조는 제68조로 이동 (2019.6.25.)]

제71조(징계의결의 요구) 학교의 장은 그 소속 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9.6.25.)

[본조 신설 2019.6.25.]

[중전 제71조는 제72조로 이동 (2019.6.25.)]

제72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학교의 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6.25.)

[중전 제72조는 제73조로 이동 (2019.6.25.)]

제73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서식)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중전 제73조는 제74조로 이동 (2019.6.25.)]

제74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6.25., 개정 2022.11.30.)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항변경 2019.6.25., 개정 2019.6.25., 2022.11.30.)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항변경 2019.6.25.)

④ 학교의 장이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항변경 2019.6.25.)

⑤ 학교의 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11.30.)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항변경 2019.6.25., 2022.11.30.)

[중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 (2019.6.25.)]

제75조(징계의결의 재심의) ①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7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6.25.)

② 학교의 장이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을 요구받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0.)

③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1.30.)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제70조·제73조 및 제74조제1항·제3항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신설 2022.11.30.)

제76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학교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1.30.)

1. (삭제 2022.11.30.)

2. (삭제 2022.11.30.)

3. (삭제 2022.11.30.)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77조는 삭제 (2019.6.25.)]

제7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9.6.25.)

제3절 대학평의회

제79조(대학평의회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0조(평의회의 구성 등) ① 평의회 평의원은 교원, 직원, 학생, 대학발전 기여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원 5인
2. 직 원 3인
3. 학 생 1인
4. 대학발전 기여자 2인

② 평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1조(평의원의 선임) ① 평의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교학지원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칙 제77조에서 정한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은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은 총학생회장 당선자 또는 차기 총학생 회장을 총장이 위촉한다.
4. 대학발전 기여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82조(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3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4조(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5조(운영세칙) 평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기금운용심의회

제86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및 당해학교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각각 둔다.

제87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 학교법인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하고, 당해학교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0.)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8조(외부 전문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1.30.)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9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 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0조(기금운용심의회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운영세칙)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사무직원

제92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무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등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임명된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93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인소속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94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복무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5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대학에 직원인사관리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9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 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99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을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필요한 행정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전문대학

제100조(총장 등)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전문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대학에 부속실을 둔다.

⑥ 부속실장은 총장, 부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9.1.29., 2021.2.26.)

제101조(대학본부) ① 전문대학에 기획조정실, 취업지원처, 교학지원처, 입학홍보처, 행정지원처, 평생직업교육처를 둔다.

② 대학본부 실·처에 각각 실·처장을 두며 실·처장은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9.1.29., 20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부속·부설기관) ① 전문대학에 필요한 부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이 보한다. 단, 부속·부설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요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를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9., 2021.2.26.)

③ 부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도서관) ① 전문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9.1.29., 202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산학협력단) ① 전문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보한다.(개정 2019.1.29., 2021.2.26.)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105조(정원) 법인 및 전문대학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30.)

제8장 보 칙

제106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10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8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 사 장	송 오 달	1931. 10. 9	4	의성군 봉양면 화진동 90-4
이 사	오 상 식	1925. 4. 18	2	서울 성북구 돈암동 51-7
"	정 운 학	1927. 1. 27	4	의성군 안계면 용기동 849
"	권 동 철	1916. 1. 1	2	의성군 다인면 삼분동 1199
"	황 효 영	1934. 10. 10	4	대구시 동인동 2가 164
감 사	신 두 수	1925. 12. 15	2	의성군 봉양면 화진동 68-1
"	김 중 욱	1927. 1. 18	1	의성군 봉양면 화진동 90

제109조(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 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평가금액(원)	출연의사	출연일자
송오달	1931.10.9	현금 등 자산	53,962,900	법인설립	1967.3.9

② 이 법인 설립이후 출연 또는 기부한 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평가금액(원)	출연의사	출연일자
김성현	1951.03.06	현금	1,000,000,000	법인인수 (1994.01.08. 및 1994.03.15. 운영권양도양수 약정 및 1994.04.07.관 할청에게 제출한 인수자 김성현의 이행각서)	1994.07.07
			1,000,000,000		1994.07.08
			1,000,000,000		1994.07.14
			500,000,000		1994.07.22
			350,000,000		1994.08.03
			100,000,000		1994.09.06
			50,000,000		1994.09.14
			180,000,000		1994.11.11
			200,000,000		1995.03.30
			1,010,000,000		1995.06.05
			300,000,000		1995.07.15
			102,000,000		1995.08.11
			280,000,000		1995.08.29
			35,000,000		1995.09.06
			1,394,930,890		1995.09.18
			1,380,000,000		1995.09.23
			300,000,000		1996.01.12
			700,000,000		1996.01.29
			2,100,000,000		1996.02.06
			80,095,850		1996.02.14
65,000,000	1996.11.15				
70,000,000	1996.11.19				
40,000,000	1996.11.25				
341,200,000	1996.11.29				
350,000,000	1996.12.31				
소계			12,928,226,740		
(주)에텐 대표이사 김성현	1951.03.06	현금	220,960,000	상동	1994.06.27
			680,000,000		1994.06.28
			10,000,000		1994.07.01
			30,000,000		1994.08.30
			757,000,000		1994.12.28
			250,000,000		1995.01.26
			1,000,000,000		1995.07.24.
500,000,000	1995.12.15				
소계			3,447,960,000		
(주)한미개발 대표이사 이정규		현금	500,000,000	상동	1998.02.27
			150,000,000		1999.02.23
			350,000,000		2001.07.05
			600,000,000		2003.03.12
소계		현금	1,600,000,000		
김선순	1954.08.09.	현금	200,000,000	상동	2001.12.27
			22,531,000		2003.03.14
소계		현금	222,531,000		
고동일	1940.01.14	부동산	305,000,000	상동	2006.09.19
총합계			18,503,717,740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신일실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일실업전문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학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5.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부학장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6.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신일실업전문대학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7.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8.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7월 20일부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직제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제101조제1항의 평생직업교육처 설치, 제2항의 평생직업교육처장 임명은 대학의 「직제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2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강사의 적용례) 이 정관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
3.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의 재심의요구의 시행의 적용례) 이 정관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의 적용례) ① 이 정관 제76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6조의 개정정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4.01.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의 적용례) 이 정관 제41조제2항의 ‘비전임교원’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의 제반사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비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私學倫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教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和 自律性を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勤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健學精神 :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健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公共性 :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內外的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的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教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自主性 : 우리는 教育의 自主性和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を 保障한 憲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教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昂揚한다.

經營合理化 :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率化하고 모든 教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教育 成果를 極大化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을 競舟한다.

和合·協力 :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 協力하는 教育環境을 造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堂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

<별표 2>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명
일반직계	7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직명은 이 직급표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3>(개정 2024.1.30.)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3명
일반직계	53명
2급	1명
3급	2명
4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1명
9급	13명
기술직계	30명
6급	6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8명

※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기타 직명은 이 직급표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